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2. 3(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1. 14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0. 1. 14
- 라. 상정일자 : 2010. 1. 29(제18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검토보고 :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제명 및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에 대한 내용 및 2개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 「도로명주소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명시되어 삭제 함. (안 제2조, 안 제3조)
-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함(안 제4조)
- 인천광역시새주소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 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제호와 내용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코자하는 내용임.
- 본 개정 조례 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제5항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금번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 시장이 당연직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 수정 사항임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함.

5. 토론요지

가. 찬성 : 문희출, 강문기, 성용기, 박승희, 이은석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5명)

8. 기타 특이사항

○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중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도로명”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도로명사업에 의하여”를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시민”을 “시민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을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25조제5항”을 “법 제22조의2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새주소”를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임”을 “1차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13조 중 “토지정보과장”을 “도로명주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새주소업무”를 “도로명주소업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p> <p>① <u>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과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2개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명칭, 구간, 너비, 설치자, 관리자, 관련 군·구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의 도로 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작성 기준연도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의 도로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연도 중에 확정 또는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도로명주소법</u>」 ----- ----- -----.</p> <p><u><삭제></u></p>

현행	개정안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항 중 해당 군수·구청장 사이에 동일한 도로명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 군수·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조(도로구간의 설정 등) ①시장은 관할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영 제6조제5항과 제7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의 연장, 너비, 기점·종점 및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예측성, 도로명주소의 영속성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군수·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한 그 결과를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4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 의무) <u>시장</u>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u>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u>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u>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u></p>	<p>제4조(도로명 ----- -----) <u>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u>----- 「<u>도로명주소법</u>」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 <단서삭제></p>
<p>제5조(도로명주소의 홍보) 시장은 <u>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u>시민</u>에게 배포할 수 있다.</p>	<p>제5조(도로명주소의 홍보) ----- ----- ----- ----- <u>시민</u> 등 -----</p>
<p>제7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 제22조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u>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u> 2. ~ 3. (생략) 4. <u>시</u> 단위의 도로명 주소안내도 제작 보급 5. (생략) 	<p>제7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u>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등</u>----- ----- 2. ~ 3. (현행과 같음) 4. <u>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u>-----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5조 제5항에 따라 <u>인천광역시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u>법 제22조의2제1항</u>---<u>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u>-----.</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p>
<p>제9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명사업과 관계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u> 2. <u>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u> 3. 4. (생략) <p>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9조(위원회의 위원)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명주소사업</u>----- ----- 2. <u>도로명주소사업</u> ----- ----- 3. 4. (현행과 같음) <p>② ----- <u>1차에 한하여 연임</u>-----</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u>토지정보과장</u>이 되고, 서기는 <u>새주소</u>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p>	<p>제13조(간사 등) ----- ----- ----- <u>도로명주소</u> 업무를 담당하는 <u>부서의 장</u> --, --<u>도로명주소</u>----- -----.</p>